



업무제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와 이지웰페어 주식회사(이하 “시스템사”라 한다)는 상호간의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 상호간에 제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정하여 고객만족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발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카드”라 함은, “진흥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카드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로서,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복지카드는 “다드림 Welfare GS칼텍스 Shine카드”를 의미하며, 그 기능 및 정의는 “카드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2. “회원”이라 함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로서, “진흥원”의 소속 임직원을 의미한다.
3. “복리후생 시스템”이란 “시스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복지관내 “복리후생 무증빙 처리시스템”을 의미한다.
4. “선택형복리후생서비스”라 함은 “진흥원”의 내부기준에 따라 사전에 설계한 복리후생 항목과 채용규모에 따라 소속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한 복리후생 예산한도 내에서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복리후생시스템을 통해 복리후생 서비스를 지원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 3 조 (제휴업무의 범위)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다음의 업무를 제휴하여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한다.

1. 회원모집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 복지카드의 신용판매 및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3. 사용대금 연체관리에 관한 사항
4. 선택적 복리후생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호 합의한 제휴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제 4 조 (복지카드 발급 및 발송)

1. 복지카드의 제작, 발급 및 재발급은 “카드사”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2. 복지카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발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단, “진흥원”의 요청에 의하여 복지카드를 “진흥원”의 인사부서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복지카드가 전달된 시점부터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복지카드 자체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진흥원”이 진다.

제 5 조 (회원모집)

1. 회원모집은 “진흥원”, “카드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실시한다.
2.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진흥원”은 “진흥원”의 소속 직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 및 복지카드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 신청인 자필로 신청서를 기재·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모집 직원이 접수한 신청서가 수정·첨삭되거나 허위 기재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은 “카드사”가 요청하는 카드발급에 필요한 제반 필요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카드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진흥원”과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에 의한 회원모집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4. 본 협약에 의한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감독기관의 명령,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복지카드 모집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 장애사유가 제거된 이후에 재개하기로 한다.





제 6 조 (복지카드발급 심사기준)

회원가입 신청자의 발급대상 선정 및 심사는 “카드사”의 기준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는 “카드사”의 부담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 8 조 (복지카드 사용한도)

회원의 복지카드 사용한도는 “카드사”의 기준에 따르며, “복리후생 시스템”상의 사용한도(선택적복리후생서비스 이용금액 한도)는 “진흥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 9 조 (시스템 운영기준)

복지카드 이용내역은 ‘복리후생시스템’ 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복지카드의 할부매출과 취소매출(부분취소매출 포함)과 가족카드 이용내역은 제외한다.

제 10 조 (시스템 장애 시 통지의무)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 중 일방의 여하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일방은 유선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경우 원인제공자가 통보 불이행 및 복구 불성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지도록 한다.

제 11 조 (선택형 복리후생 이용대금 결제 및 정산)

회원은 연중 제한 없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회원의 복지 이용금에 대하여 매 익월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 “카드사” 및





“시스템사” 간의 상세 정산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드사”와 “시스템사”는 회원이 카드이용내역을 복지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진흥원”은 회원이 “시스템사”의 시스템에서 신청한 복지이용금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복리후생 담당부서장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
3. “시스템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흥원”으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회원별 “복지카드” 이용 매출 중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내역을 매월 5일까지 “진흥원”과 “카드사”에게 제공한다.
4. “진흥원”은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카드사”의 지정계좌에 매월 15일(해당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입금한다.
5. “카드사”는 “진흥원”의 입금 대금에 이상이 없는 경우, 회원의 “복지포인트” 차감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회원의 “복지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한다.
6. “진흥원” 또는 “회원”이 복지이용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와 “시스템사”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진흥원”과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 “진흥원”이 지정한 결제일에 해당월 “회원”의 이용/차감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입금의무를 면한다.

제 12 조 (클레임 처리)

1. “시스템사”는 “시스템사”의 온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회원 클레임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회원 클레임의 발생 시, “진흥원”과 “카드사”, “시스템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있는 일방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對 회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

제 13 조 (신용카드 일반규정 적용)

복지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여부 및 거래정지 등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에 관한 일반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의 신용카드규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제 14 조 (영업비밀의 보장)

1.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 이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 (회원신용정보 관리 및 누출금지)

1. "진흥원"은 회원의 복지이용에 관련한 정보를 "카드사"와 "시스템사"에게 제공한다.
2. 복지이용 관련된 제반정보는 "시스템사"가 관리하되, "진흥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카드사"와 "시스템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진흥원"에 제공한다.
 - ① 카드회원 현황정보
 - ② 기타 합의된 회원정보
3.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의 수행상 알게 된 회원의 일체의 신용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출하거나 본 협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전조 및 본조는 본 협약의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 16 조 (신의성실의 의무)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이미지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본 협약상의 업무제휴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7 조 (협조사항)

1.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 상의 업무제휴 내용을 3사의 전 지점에 통보하고 회원이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진흥원”과 “시스템사”는 “카드사” 이외의 제3자(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 회사 포함)와 본 협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영업상의 제휴행위(회원모집 포함)를 할 수 없다.
3. “진흥원”과 “시스템사”가 본 협약 기간 중 “카드사” 이외의 제3자와 전 항의 제휴를 함으로써 “카드사”에게 손해(“카드사”가 기 투입한 전산개발비, 적립포인트 등을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기로 하고, “카드사”는 기타 제휴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정보변경)

“진흥원”과 “시스템사”는 “시스템사”의 매장 및 회원사에 대한 영업정보(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주소 등) 및 “진흥원”의 직원의 인적사항(직원의 재직사항 등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게 즉시 통보하여 본 협약상의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 지연이나 미통보로 인하여 회원 및 “카드사”에게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시스템사”가 전부 책임진다.

제 19 조 (제3자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호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탁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협약내용변경 및 특별약정)

1.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해 문제가 이러한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





- 기로 한다.
2. 본 협약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시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본 협약 체결이후 정부의 규제 및 기타 관공서(금융감독기관 등)의 규약 또는 지침에 의하여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카드사”는 “진흥원”과 “시스템사”의 동의 또는 별도의 협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카드사”는 “진흥원”과 “시스템사”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본 협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22조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1.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 및 영업양수도의 경우 포함)에도 제휴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도, 화의신청, 파산신청, 본 협약상의 의무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일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유 또는 당해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은 그에 대한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3. 본 협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진흥원”, “카드사”, “시스템사”는 본 협약의 종료로 인한 회원의 클레임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원에게 적극 고지하기로 한다.





제 23 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 조 (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인 합의관할로 하여 처리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진홍원”, “카드사”, “시스템사”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3. 13

“진홍원”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강만석(인)

“카드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영진(인)

“시스템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7-10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용(인)